

# 동작구 소식지 홍보문 (안)

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.

- 납세의무자 :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㎡ 초과 사업장의 사업주
- 납부세액 : 사용연면적(㎡) × 250원 (단, 오염물질배출 사업소 : 500원)
- 신고납부기한 : 2015. 7. 1 ~ 7. 31
- 신고방법 : 인터넷(이택스 또는 위택스), 방문, 우편, FAX(820-9991)
- 납부방법 : 금융기관, 인터넷 (이택스 또는 위택스)
- 문의처 : 부과과 지방소득세팀 (820-9014, 9054)